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1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도의회 신청사, 후생복지관 건립 등에 따라 청내 주차난 심화, 도청 방문 민원인 및 각종 행사 내방객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
- 인근 주차장과의 요금 격차를 줄여 공무 목적 외 차량 출입을 최소화하여, 직원 등 주차 분산을 유도하여 도민 불편 해소하고
- 다자녀 가정,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 조정(안 제4조)
 - 현재 : 최초 30분까지 기본요금 500원,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 추가 징수
 - 개정 : 최초 1시간까지 무료, 1시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 추가 징수
- 민원인, 다자녀 가정, 친환경 전기자동차 감면 규정 정비(안 제5조)
 - 민원인(60분 면제 → 2시간 면제)
 - 다자녀 가정 기준 변경(3자녀 → 2자녀)
 - 친환경 전기자동차 감면(1시간 → 2시간) 등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사환경개선사업, 후생복지관 건립 등에 따라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어 주차난이 심화되고, 방문민원인 및 각종 행사 내방객의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, 인근 주차장과의 요금 격차를 줄여 공무 목적 외 차량출입을 최소화하여 직원 등의 주차 분산을 유도하고,
- 민원인, 다자녀 가정,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등의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